

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(제35조의4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, 승인 취소(제2호가목·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
- 나)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
- 다)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
- 다)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

마. 처분권자는 제2호(가목·나목·다목·마목·아목·카목·타목·파목 및 하목은 제외한다)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법 제6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·변경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1호	승인 취소			
나.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2호	승인 취소			
다.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3호	승인 취소			
라.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4호	정지 2개월	정지 4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
마. 법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5호	승인 취소			
바.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6호	정지 2개월	정지 4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
사. 법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7호	정지 2개월	정지 4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
아. 법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8호	정지 2개월	정지 4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
자.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9호	정지 2개월	정지 4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
차.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10호	정지 2개월	정지 4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
카.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11호	승인 취소			
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12호	정지 3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	

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				
과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13호	정지 3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
하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58조의11 제1항제14호	정지 3개월	정지 6개월	승인 취소